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(안)

- * 개정 이유
- 1) 대상 확대 : 경비원 ⇒ 공동주택 노동자로 대상확대
- 2)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범위 확대 : 인권증진 뿐 아니라 고용안정까지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범위 확대
- 3) 공동주택 노동자의 지원의 범위 확대

개정 전	개정 후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	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동주택 <u>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</u> 을 규정하여 <u>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</u> 을 목 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공동주택"이란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. 2. <u>"경비원"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 3. "입주자 등"이란 공동주택 입주자, 입주자대표회의(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<u>경비원</u> 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. 4. "법률지원"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. 5. "기본시설"이란 <u>경비원의</u>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(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)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공동주택"이란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. 2. "공동주택 노동자"란 대덕구에 주소를 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, 관리원, 미화원,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3. "입주자 등"이란 공동주택 입주자, 입주자대표회의(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. 4. "관리주체"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 5. "법률지원"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. 6. "기본시설"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(화장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하다)은

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.
-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 력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

제4조(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)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,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 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의 범위)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1.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 저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
- 2.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공공기관 연계 (삭 제)
- 3.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

실 및 샤워시설, 냉.난방기 등을 말한다.)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 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<u>자의</u>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<u>입주자 등</u> 및 주택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4조(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) 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, 입주자 등과 상 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 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시책 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의 범위)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.

- 1.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
- 2.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 저신적 피해가 발 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
- 3.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
- 4.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

	5. 자치관리 및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, 공동 주택 관리비용 지원,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등에 우선 지원 할 수 있 다. 6.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 정하는 사항
제6조(실태조사 및 시정권고) ① 구청장은 <u>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, 기본시설의 설치·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</u> 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<u>인권보호에</u>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,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	제6조(실태조사 및 시정권고) ① 구청장은 <u>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실태, 고용조건, 노동환경,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</u> 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<u>인권보호 및 고용 안정에</u>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,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, 폭행,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제7조(인권 교육 및 홍보) <u>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, 기본시설의 설치 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	제7조(인권 교육 및 홍보) ①구청장은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 1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,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,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